2020년도 제17차

금융통화위원회(정기) 의사록

한 국 은 행

1. 일 자 2020년 7월 30일(금)

2.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

3.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(총재)

고 승 범 위 원

윤 면 식 위 원(부총재)

임지원 위원

조 윤 제 위 원

서 영 경 위 원

주 상 영 위 원

4. 결석위원 없 음

5.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유 상 대 부총재보

정 규 일 부총재보 이 승 헌 부총재보

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

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

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

김 현 기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

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

성 광 진 의사팀장

6. 회의경과

가. 의결안건

<의안 제34호 -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(안)>

(1) 담당 부총재보가 「한국은행법」 제28조제3호·제9호,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회사채시장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긴급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.

(2) 위원 토의내용

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7월 22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.

위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을 종료하는 것보다는 운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은 작고 편익은 더 커 보인다고 언급하면서, 시장참가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운용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국내외 금융·경 제 여건의 불확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 연장은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하였음.

(3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의결사항

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한다.

<붙임>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(안)(생략)